

서울시 자치구 복지 현황

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치구 복지 현황

www.welfare.seoul.kr



연구진

서 종 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위원, 연구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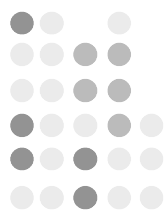
김 세 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원, 공동연구)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3
제2장 서울시 자치구 복지 실태	5
1. 개요	7
2. 분석결과	8
제3장 요약 및 제언	25
1. 요약	27
2. 제언	29
■ 참고문헌	31
■ 부 록	33

표 · 목 · 차

〈표 2-1〉 지역복지 영역별 세부 지표	7
〈표 3-1〉 서울시 자치구 지역복지 현황 요약	27



제1장 | 연구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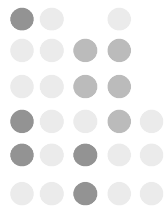
①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부록1 참고)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복지격차”는 소득, 교육, 주거, 물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난 자치구간 복지 차이라고 정의(조례 제2조)
 -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제8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실태조사 내용은 자치구간 복지 격차, 자치구별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 자치구별 복지 격차의 해소 정도 등(조례 제13조)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복지 실태분석을 통해 복지격차해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복지 실태분석
 -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부록2)에 제시된 지역복지 통계를 근거로 ‘서울통계’ 홈페이지에서 수집 가능한 지표(17개) 중심으로 분석
- 구체적인 내용
 - 첫째, 서울시 연도(2004년, 2009년, 2014년)별 지역복지 추이 파악
 - 둘째, 2014년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 지역복지 현황 비교
 - 셋째, 2004년(또는 2009년)과 201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지역복지 비교



제2장 | 서울시 자치구 복지 실태 |



2 서울시 자치구 복지 실태

1. 개요

■ 분석 지표

-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복지 관련 6개 영역 자료 분석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복지 관련 통계(부록2) 중에서 자치구 단위 통계가 없거나 자치구 단위 통계 취합이 어려운 지표를 제외하고 6개 영역 선정
- 영역별 지표(표 2-1, 세부산식은 부록 2 참고)
 - 인구(4개), 재정(3개), 사회(3개), 소득정책(2개), 건강정책(4개), 주거정책(1개) 등 17개 지표

〈표 2-1〉 지역복지 영역별 세부 지표

영역	지표
인구(4개)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독거노인비중, 등록장애인비중
재정(3개)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보건예산비중, SOC 예산비중
사회(3개)	등록외국인비율, 조이혼율, 조출생률
소득정책(2개)	1인당 복지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건강정책(4개)	1인당 보건예산,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의료인 1인당 인구수, 사망률
주거정책(1개)	주택보급률

■ 작성 방법

- 서울시 지역복지 추이 파악을 위해 2014년 기준 2009년과 2004년 변화 비교
- 2014년 기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지역복지 통계 비교
-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복지 변화 파악
 - 서울시 5대 권역¹⁾별 변화 파악
 - 2004년(2004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9년)과 2014년 25개 자치구 변화 비교

1) 도심권(3개 구)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8개 구)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3개 구)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7개 구)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4개 구)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임.

2. 분석결과

인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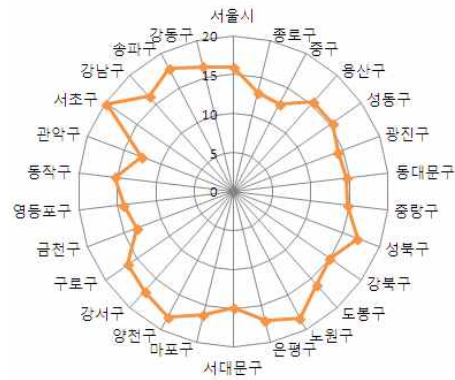
● 유년부양비(백분율, (0~14세 인구 수/15~64세 인구 수) × 100)

- 10년간 서울시 14세 미만 인구수는 0.7%p 감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2004년에 비해 14세 미만 인구수 감소
- 2014년 기준 14세 미만 인구수가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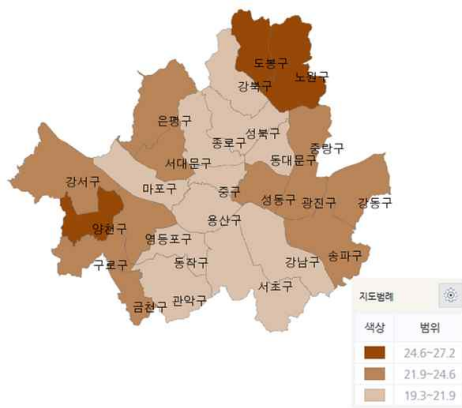
● 유년부양비 추이(2004~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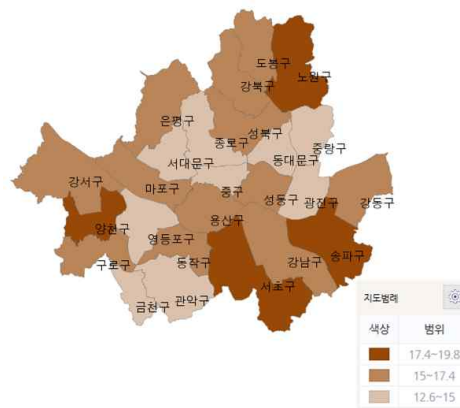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유년부양비(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유년부양비(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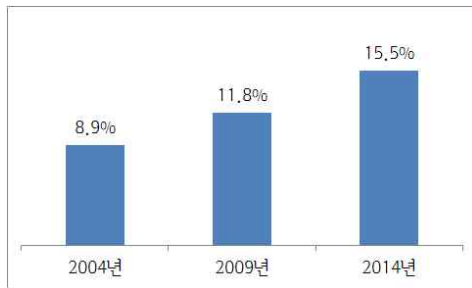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유년부양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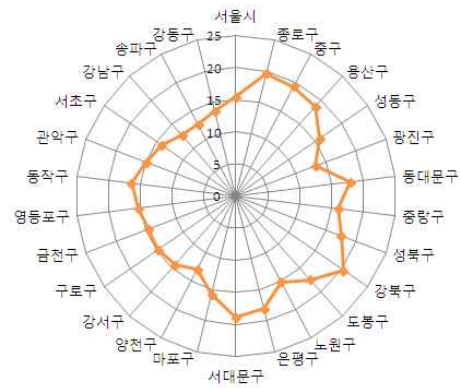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백분율, (65세 이상 인구수/15~64세 인구 수) × 100)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은 10년 동안 1.7%p 증가
-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대적 비율은 도심권과 서북권에 많이 거주
- 2004년 기준 25개 자치구 모두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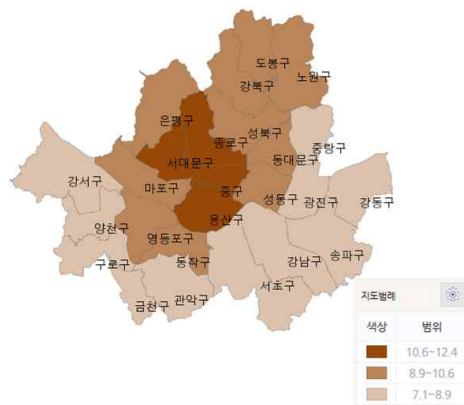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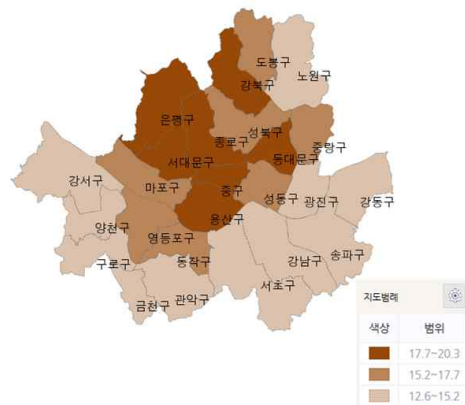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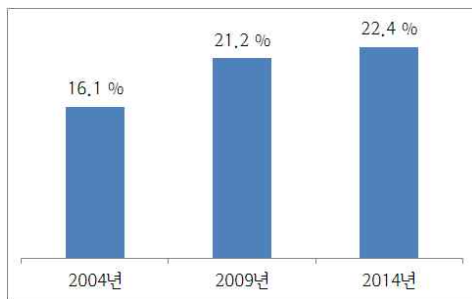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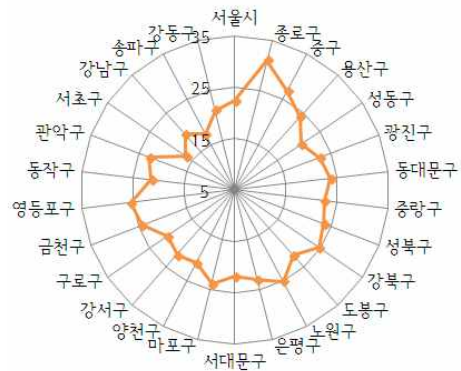
● 독거노인비중(백분율, (독거노인수/65세이상 주민수) × 100)

- 서울시 독거노인비율은 10년 동안 1.4%p 증가
- 독거노인비율이 상대적으로 도심권 집중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독거어르신 비율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구로구, 동남권 역은 독거어르신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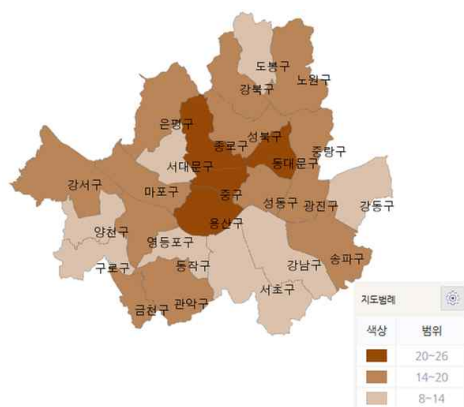
● 독거노인비중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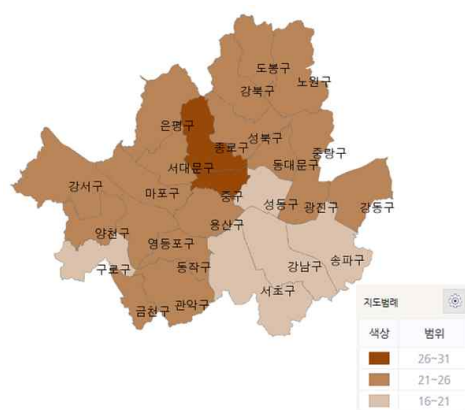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독거노인비중(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독거노인비중(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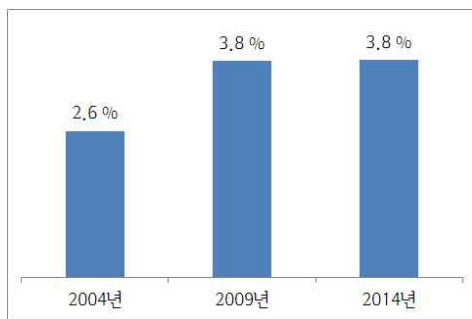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독거노인비중(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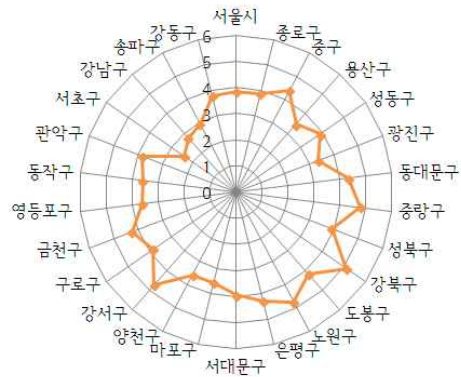
● 등록장애인비중(백분율, (등록장애인수/행정구역인구수) × 100)

- 등록장애인비중은 10년 동안 1.5%p 증가
- 등록장애인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 2004년에 비해 2014년 일부 자치구에 집중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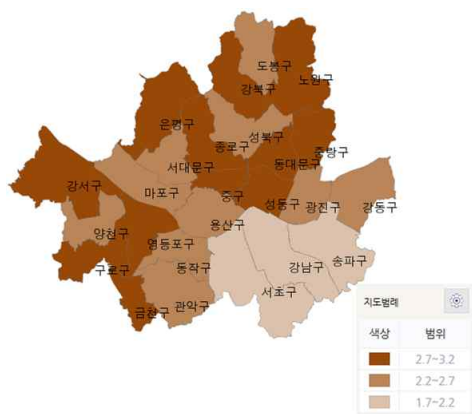
● 등록장애인비중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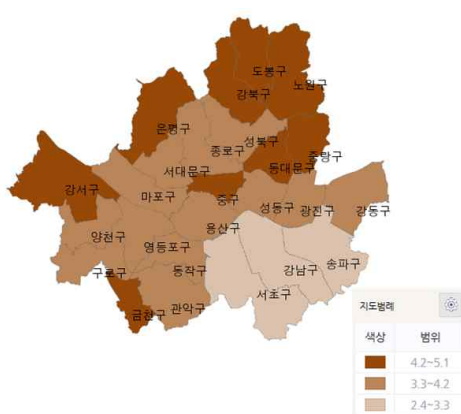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장애인비중 (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장애인비중 (200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장애인비중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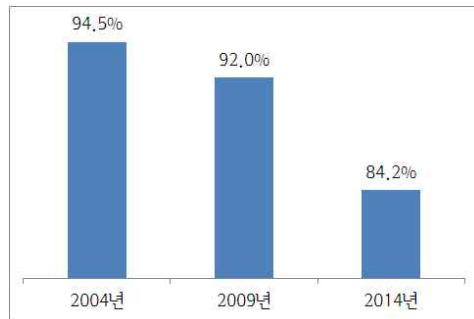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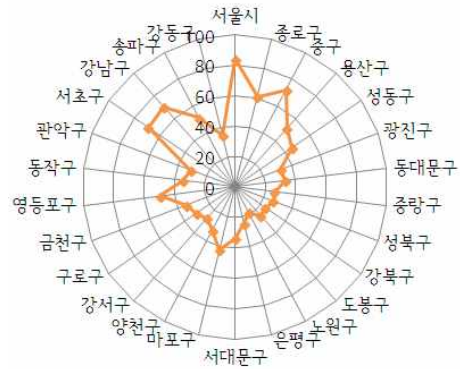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백분율,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규모] × 100)

-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0.9%p 감소
- 서울시에 비해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낮음
- 중구, 서초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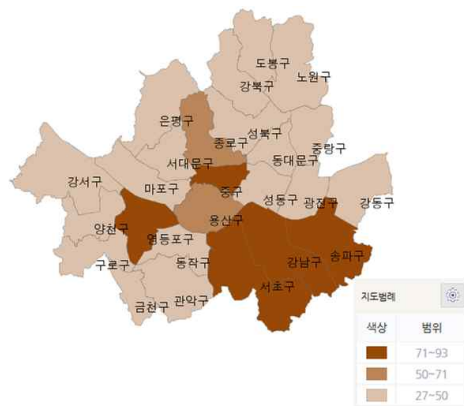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 추이(2004~2013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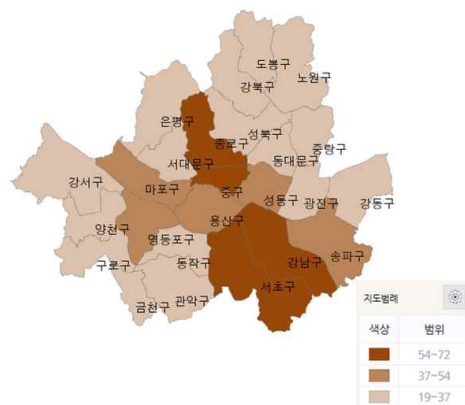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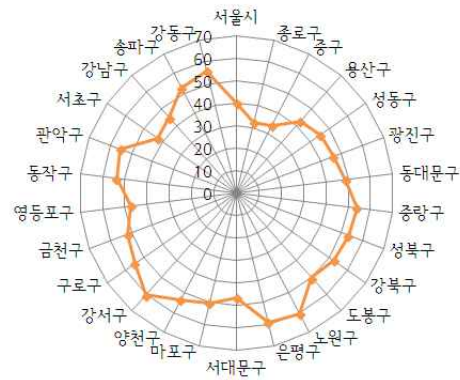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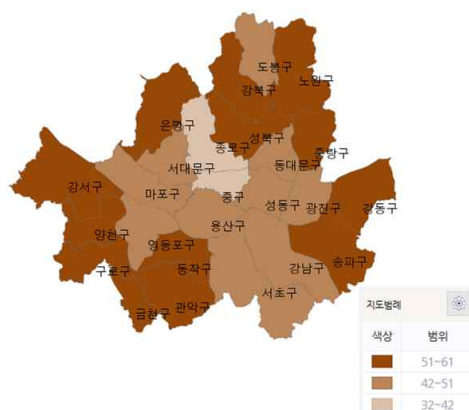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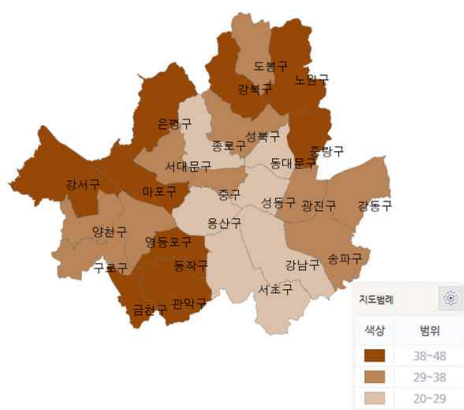
2) 2004년은 본청 기준자료임.

-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백분율,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전체 예산) × 100)
 -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은 5년 동안 1.5%p 증가
 - 서울시와 도심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 높음
 - 5년 동안 25개 자치구 모두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 상승
-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 추이 (2009~2013년)
-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 (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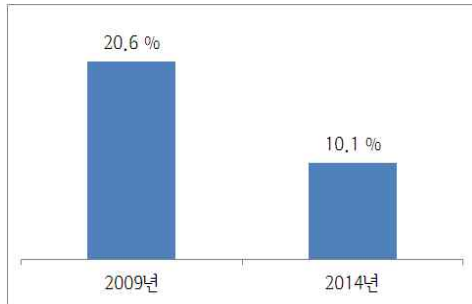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보건의료예산 비중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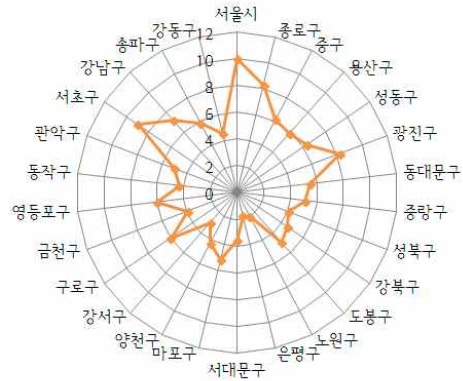
● SOC예산 비중(백분율, (SOC예산/전체 예산) × 100)

- SOC 예산 비중은 5년간 0.49%p 하락
- SOC 예산 비중은 서울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초구, 광진구 순
- 서초구와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SOC 예산 지속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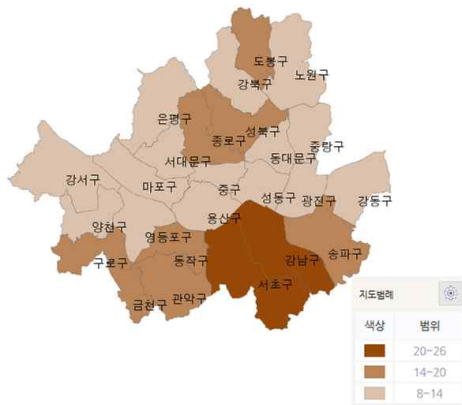
● SOC예산 비중 추이(2009~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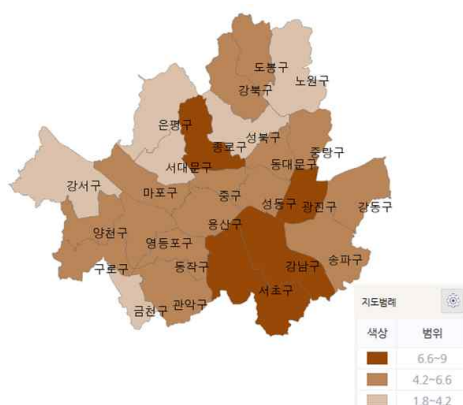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SOC예산 비중(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SOC예산 비중(2009년)



● 서울시 자치구별 SOC예산 비중(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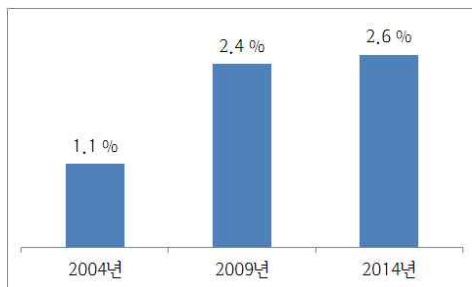
■ 사회

● 등록외국인비율(백분율, (등록외국인수/행정구역인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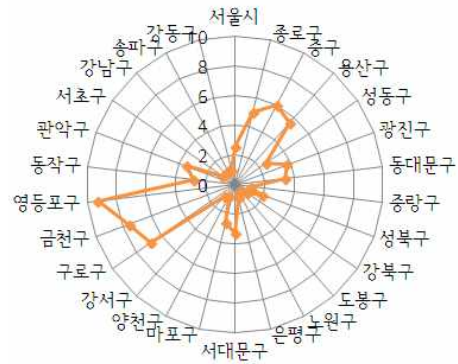
- 등록외국인비율은 10년 동안 2.4%p 증가

- 등록외국인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주로 거주하고 최근 관악구, 광진구 등에 거주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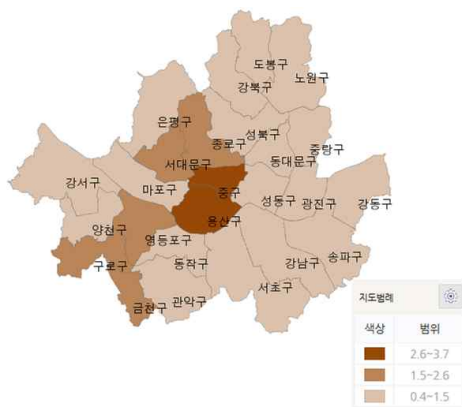
● 등록외국인비율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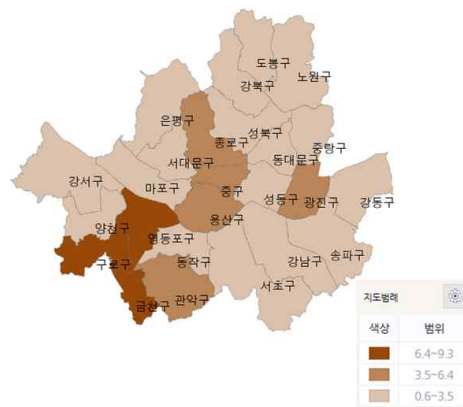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외국인비율 (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외국인비율 (200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외국인비율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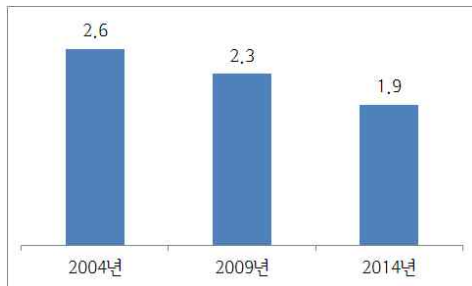


● 조이혼율(천분율, (이혼건수/행정구역인구수)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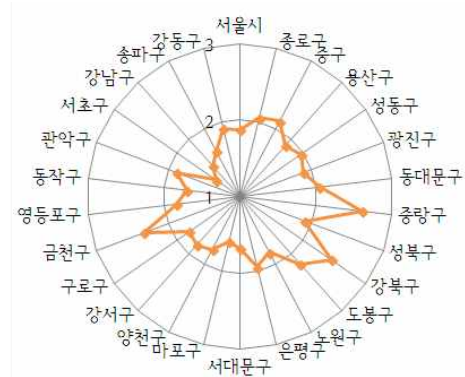
- 조이혼율은 10년 동안 0.7%p 감소

- 조이혼율은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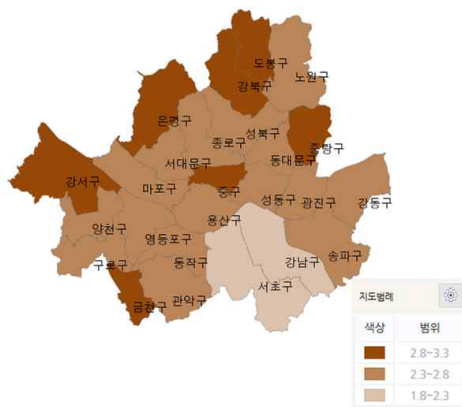
● 조이혼율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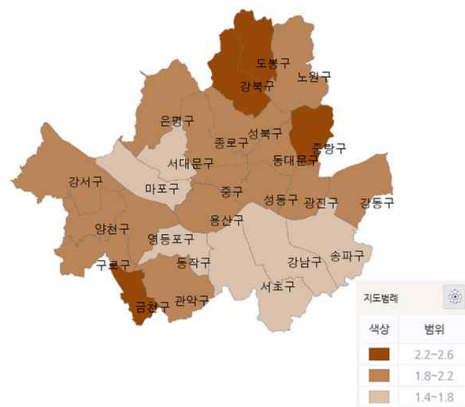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조이혼율(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조이혼율(200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조이혼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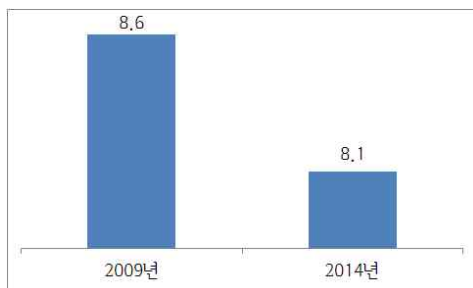


● 조출생률(천분율, (출생아수/행정구역인구수)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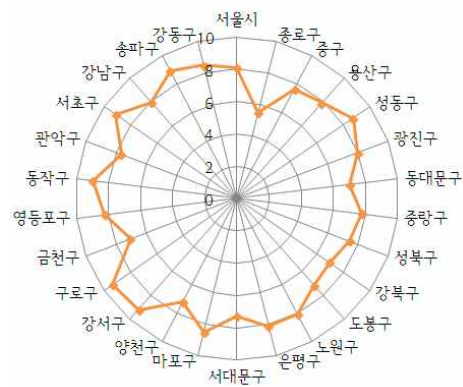
- 5년 동안 조출생률은 0.94%p 감소

- 서남권과 동남권은 출생아수 비율 높은 반면, 종로구는 지속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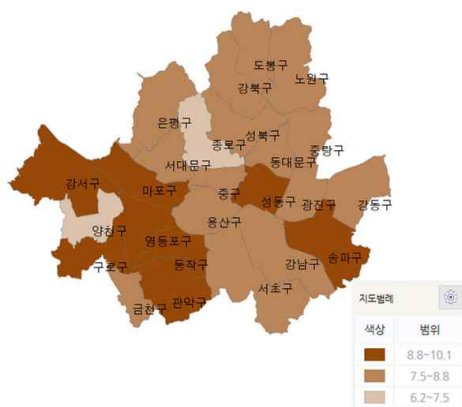
● 조출생률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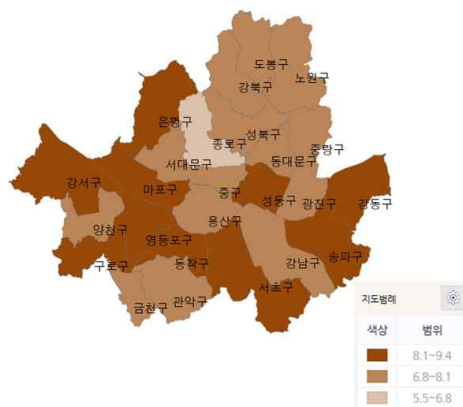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조출생률(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조출생률(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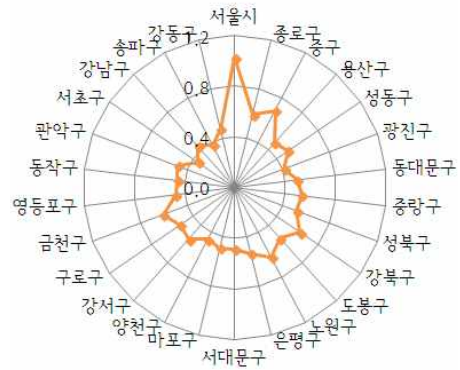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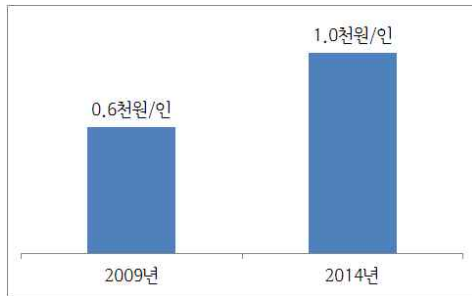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조출생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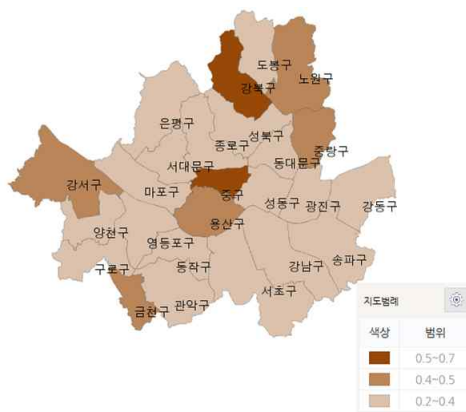


소득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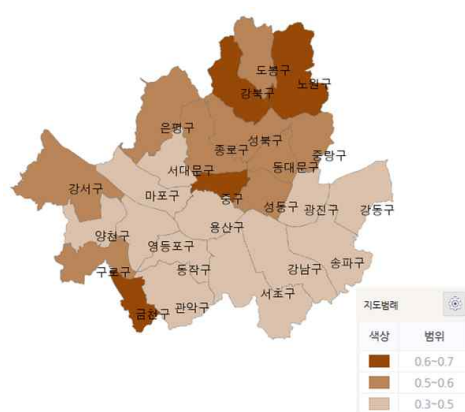
- 1인당 복지예산(천원/인, 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 5년 동안 1인당 복지예산은 1.6배 상승
 - 서울시와 도심권의 1인당 복지예산 비중 높음
 - 중구, 강북구는 지속적으로 높고, 최근 강북구, 노원구, 금천구도 예산 비중 높음
- 1인당 복지예산 추이(2009~2013년)
-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복지예산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복지예산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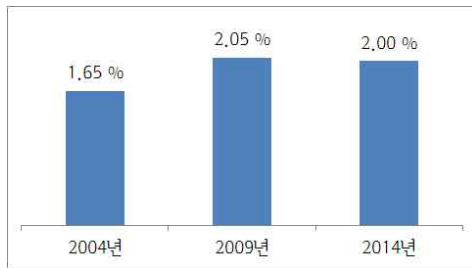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복지예산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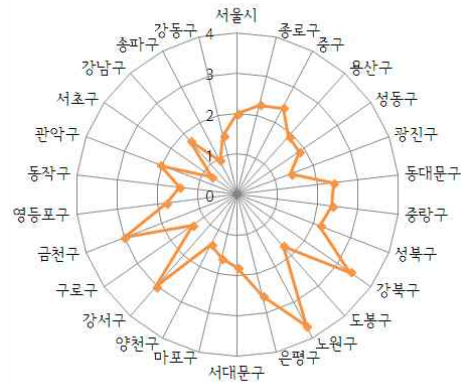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백분율, (기초보장수급자/행정구역인구수)×100)

- 10년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1.2%p 증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강서구와 노원구가 높지만, 2014년 강북구, 금천구 상대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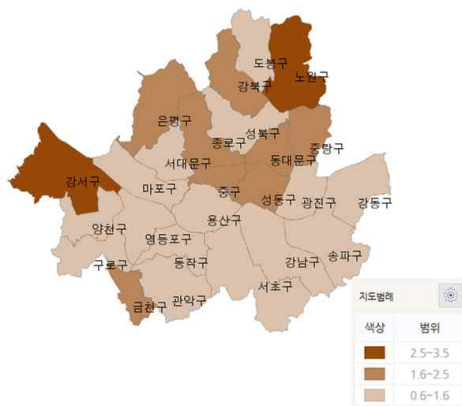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추이 (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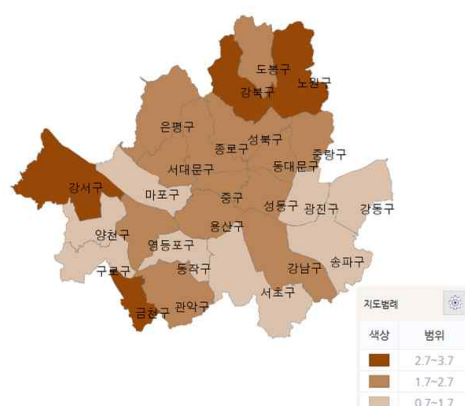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04년)



●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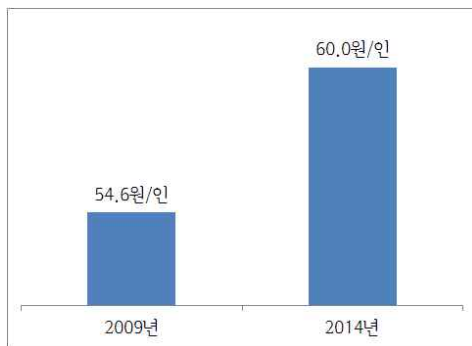


건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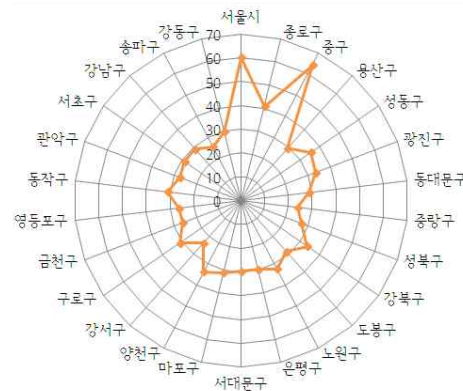
1인당 보건예산 (천원/인, 보건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 5년 동안 1인당 보건예산은 1.2배 상승
- 서울시, 중구, 종로구는 1인당 보건예산 비중 큼
- 중구는 1인당 보건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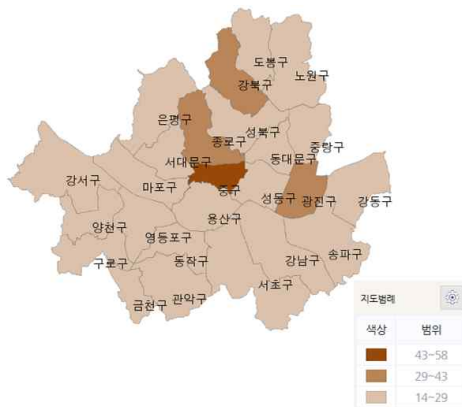
1인당 보건예산 추이(2009~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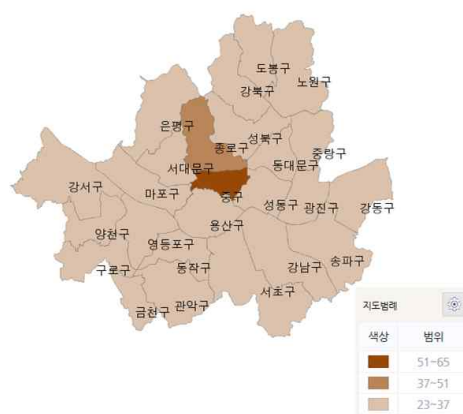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보건예산 (2014년)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보건예산 (2009년)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보건예산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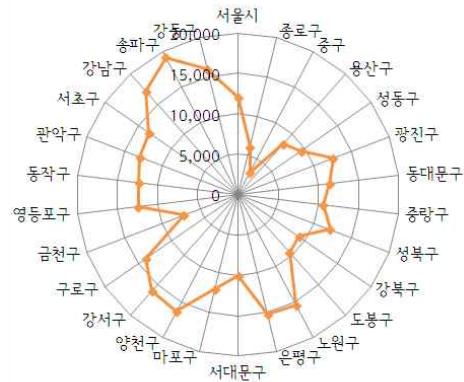
●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명, (행정구역인구수/보건소의료인수))

-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는 10년 동안 0.96배 감소
- 도심권역은 보건소 의료인수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가 적고,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강서구는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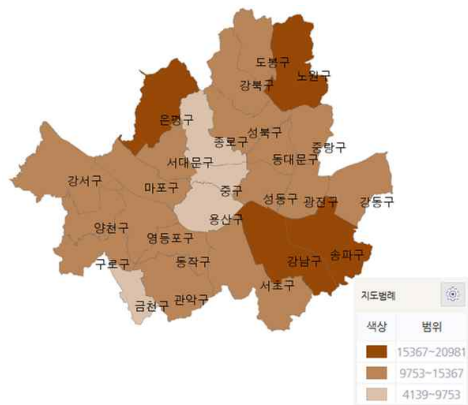
●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추이 (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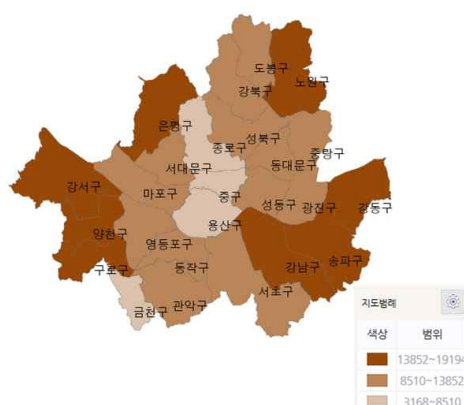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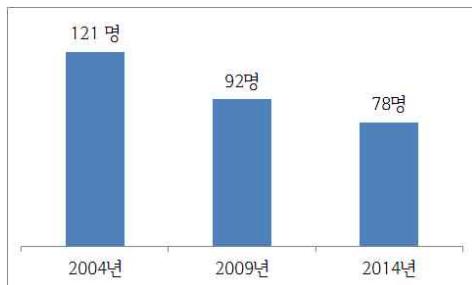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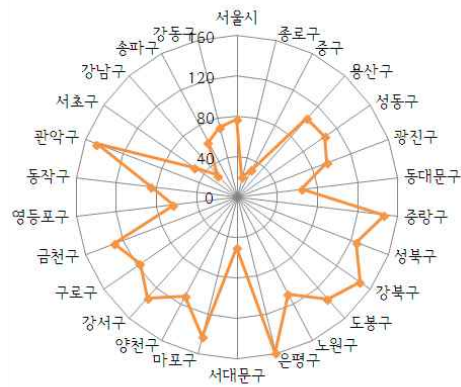
● 의료인 1인당 인구수(명, 행정구역인구수/의료인수)

-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10년 간 0.6배 감소
-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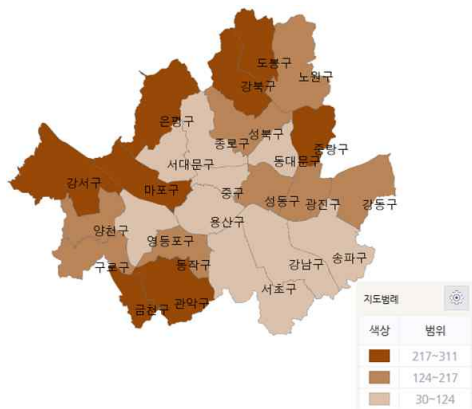
● 의료인 1인당 인구수 추이 (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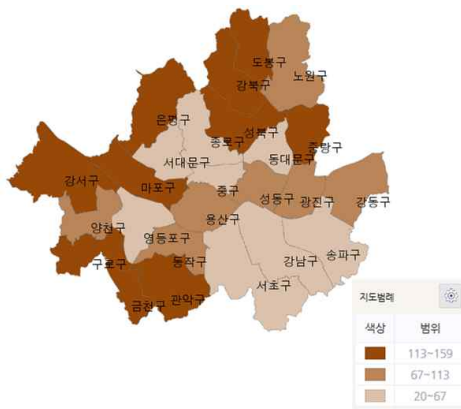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00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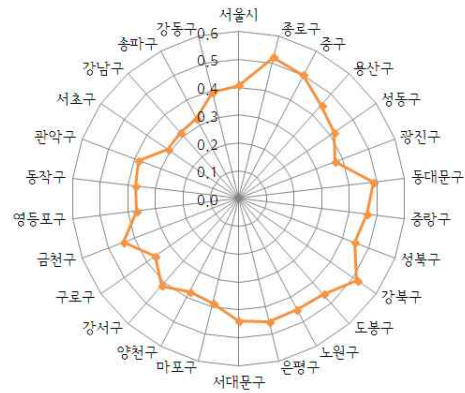
● 사망률(백분율, 사망자수/인구 수 × 100)

- 사망자비율은 5년 간 1.1%p 증가
- 서울 평균과 비교할 때, 도심권, 동북권은 사망률이 높고 동남권은 사망률 낮음
- 최근 5년간 상대적으로 종로구와 강북구 사망률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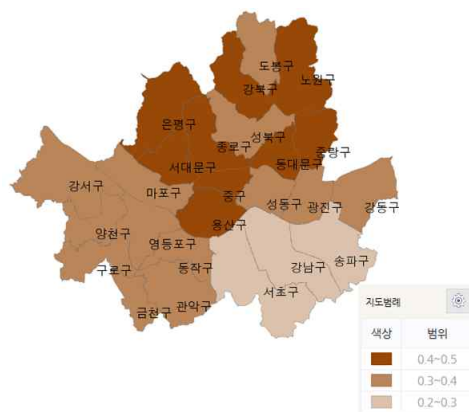
● 사망률 추이(2009~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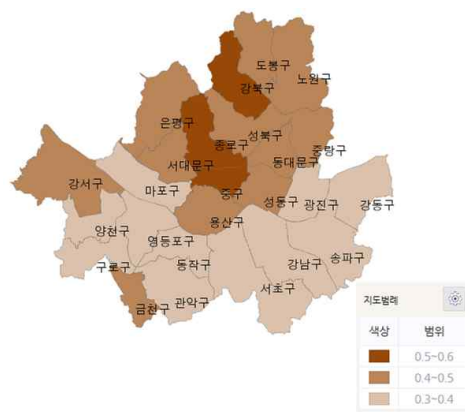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사망률(2014년)



● 서울시 자치구별 사망률(2009년)



● 서울시 자치구별 사망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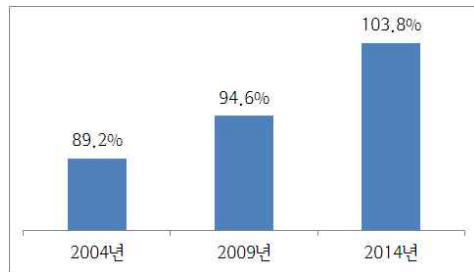
주거정책

주택보급율(백분율, 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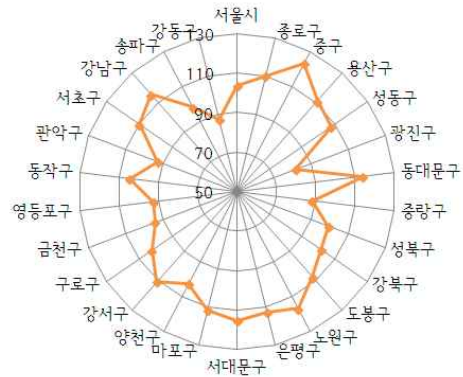
- 주택보급율은 10년 간 1.2%p 증가하여 주택보급율 100% 달성

- 2014년 25개 자치구 중 주택보급율이 90% 미만 자치구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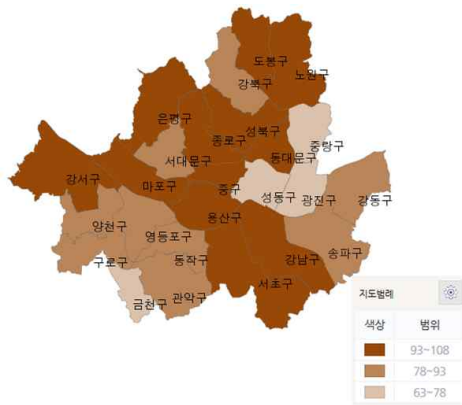
주택보급율 추이(2004~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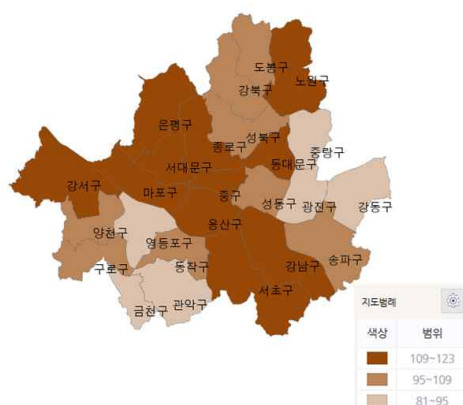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보급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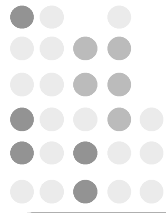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보급율(2004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보급율(2014년)





제3장 | 요약 및 제언 |



③ 요약 및 제언

1. 요약

- 경제활동인구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복지대상자 수요 증가
 - 유년부양비에 비해 노년부양비와 독거노인비중 비율 증가 속도 빠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록장애인비중, 그리고 등록외국인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조출생률 감소
-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반면, 사회복지보건예산과 1인당 복지예산·보건예산 증가
 - 재정자립도는 10년 간 0.9%p 하락한 반면, 관련 복지예산은 대략 1.4배 정도 증가
 - 5년간 사회복지보건예산은 모든 자치구에서 상승
 - 서울시와 도심권은 복지예산 비중 높고, 서울시, 중구, 종로구는 보건예산 비중 큼
- 건강 및 주거정책은 10년 간 양적 증가
 - 보건소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양적 증가 뚜렷
 - 건강정책에서 보건소 의료인과 의료인 비중이 25개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

〈표 3-1〉 서울시 자치구 지역복지 현황 요약

영역	지표	내용
인구	유년부양비(▽)	-서울시 14세 미만 인구수는 0.7%p 감소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2004년에 비해 14세 미만 인구수 감소
	노년부양비(▽)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은 1.7%p 증가 -2004년 기준 25개 자치구 모두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 증가
	독거노인비중(▽)	-서울시 독거노인비율은 10년 동안 1.4%p 증가 -독거노인비율이 상대적으로 도심권 집중
	등록장애인비중	-등록장애인비중은 1.5%p 증가 -2004년에 비해 2014년 일부 자치구 집중 거주

영역	지표	내용
재정	재정자립도(▽)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0.9%p 감소 -중구, 서초구,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사회복지보건예산비중(△)*	-사회복지보건예산은 1.5%p 증가 -5년 동안 25개 자치구 모두 사회복지보건예산 비중 상승
	SOC 예산비중*	-SOC 예산 비중은 0.49%p 하락 -서초구와 강남구는 SOC 예산 지속 지출
사회	등록외국인비율	-등록외국인비율은 2.4%p 증가 -등록외국인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광진구 등 거주 비율 증가
	조이혼율	-조이혼율은 0.7%p 감소
	조출생률*	-조출생률은 0.94%p 감소 -서남권과 동남권은 출생아수 비율 높은 반면, 종로구는 지속적으로 낮음
소득정책	1인당 복지예산(△)*	-1인당 복지예산은 1.6배 상승 -서울시와 도심권의 1인당 복지예산 비중 높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1.2%p 증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강서구와 노원구 이외 최근 강북구, 금천구 상대적 상승
건강정책	1인당 보건예산(△)*	-1인당 보건예산은 1.2배 상승 -서울시, 중구, 종로구 1인당 보건예산 비중 큼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는 0.96배 감소 -도심권역은 보건소 의료인수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가 적고,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강서구는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가 많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0.6배 감소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 많음
	사망률(▽)*	-사망자비율은 5년 간 증가 -서울 평균과 비교할 때, 도심권, 동북권은 사망률이 높고 동남권은 사망률 낮음
주거정책	주택보급율(△)	-주택보급율은 10년 간 1.2%p 증가하여 주택보급율 100% 달성 -2014년 기준 주택보급율이 90% 미만 자치구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 5년 간 통계자료 분석

주) △ 향상, ▽ 악화, 미표시: 보조지표

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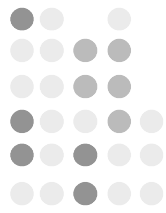
- 인구 및 사회현황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파악 필요
 - 연령별 인구추이는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복지대상자 수요(독거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는 특정 지역 집중 거주
- 지역사회 수요, 자원과 예산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복지격차 해소 방안 마련
 - 노년부양비, 조출생률, 1인당 보건예산,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등의 지표를 종합적 고려 필요
 - 도심권은 65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조출생률이 낮은 지역이지만 1인당 보건예산과 보건소 의료인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가 적음
 - 지역 인프라로 볼 수 있는 SOC 예산 비중, 의료인수 증가, 주택보급률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과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필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는 고용, 돌봄, 건강, 소득, 경제 등 지역단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복지 지표 생성·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복지 통계 10개 영역(부록2 참고) 중 본 보고서에는 6개 영역 지역복지 통계 현황만 제시
 - 이유는 재정과 경제/고용·사회·교육정책 등 일부 지역복지 통계의 생산이 자치구별로 구축되지 않았거나 돌봄·고용정책은 통계 자체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

<참고문헌>

서울특별시(2014),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홈페이지>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 부록 |



부록 1.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1.] [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및 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 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 및 건강 격차"란 소득·교육·고용·주거·물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함)간 복지 및 건강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시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③ 시는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지 및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자치구간 상호 이해를 전제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제7조(취약자치구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및 건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 및 건강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복지 및 건강관련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제8조(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4년마다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자치구의 복지·건강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한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종합계획의 반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이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분야 복지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2. 노인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4.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지원 분야 복지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5. 여성 및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6.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건강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2. 건강생활 및 보건서비스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3. 생활보건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4.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2.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수요와 재정여건
3.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
4. 그 밖에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

제14조(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목표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및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5.5.1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4명 이내의 자치구 부구청장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 유관단체의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보건의료 유관 기관의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5.5.14>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24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수렴)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복지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64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복지건강본부” 를 각각 “복지본부장, 시민 건강국장” 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부록 2.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산식

영역	지표명	단위	산출방법
인구	유년부양비	백분율	$(0-14\text{세 인구수}/15-64\text{세 인구수})\times 100$
	노년부양비	백분율	$(65\text{세 이상 인구수}/15-64\text{세 인구수})\times 100$
	독거노인비중	백분율	$(\text{독거노인수}/65\text{세 이상 주민수})\times 100$
	등록장애인비중	백분율	$(\text{등록장애인수}/\text{행정구역인구수})\times 100$
경제/ 고용	고용률	백분율	$(\text{취업자}/\text{만25세 이상 인구})\times 100$
	여성고용률	백분율	$(\text{여성취업자}/\text{만15세이상 여성인구})\times 100$
	노인고용률	백분율	$(\text{노인취업자}/\text{만65세 이상 인구})\times 100$
	실업률	백분율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times 100$
	청년실업률	백분율	$(15-29\text{세 실업자}/15-29\text{세 경제활동인구})\times 100$
재정	사업체 수	개소	행정구역 내 총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백분율	$[(\text{지방세}+\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times 100$
	사회복지보건예산 비중	백분율	$(\text{사회복지 및 보건예산}/\text{전체 예산})\times 100$
사회	SOC예산 비중	백분율	$(\text{SOC예산}/\text{전체예산})\times 100$
	범죄율	천분율	$(\text{범죄발생건수}/\text{행정구역인구수})\times 1,000$
	등록외국인비율	백분율	$(\text{등록외국인수}/\text{행정구역인구수})\times 100$
	조이혼율	천분율	$(\text{이혼건수}/\text{행정구역인구수})\times 1,000$
	자살률	십만분율	$(\text{자살건수}/\text{행정구역인구수})\times 100,000$
소득 정책	조출생률	천분율	$(\text{출생아수}/\text{행정구역인구수})\times 1,000$
	1인당 지자체 복지예산	천원/인	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1인당 지자체 자체 복지예산	천원/인	자체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당 지자체 자체 복지예산	천원/인	자체복지예산(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국민기초보장수급자 비율	백분율	$(\text{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text{행정구역 인구수})\times 100$
	차상위계층 비율	백분율	$(\text{차상위 계층}/\text{행정구역 인구수})\times 100$
건강 정책	1인당 지자체 자체 보건 관련 예산	천원/인	보건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명	행정구역인구수/보건소의료인수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명	행정구역인구수/의료인수
	연령별 사망률	천분율	$(\text{특정연령계층에서의 연간사망자수}/\text{당해 연령계층의 연앙인구})\times 1,000$
교육 정책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천원/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재적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재적 학생수/재적 교원수
	학업중단율	백분율	$(\text{학업중단자수}/\text{재적학생수})\times 100$
주거 정책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예산 비중	천원/인	주거복지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차상위 계층 수)
	주택 전세가격 지수	지수	각년도 11월의 해당지역의 주택 전세가격 지수
	주택보급률	백분율	$\text{주택수}/\text{일반가구수}\times 100$

영역	지표명	단위	산출방법
돌봄	돌봄 필요노인 1인당 노인돌봄예산 비중	천원/인	노인돌봄예산(천원)/돌봄필요노인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돌봄예산 비중	천원/인	장애인돌봄예산(천원)/등록장애인수
	영유아 1인당 영유아 돌봄예산 비중	천원/인	영유아(0~5세)돌봄예산(천원)/0-5세영유아수
	노인돌봄 이용자 비율	백분율	(노인돌봄 관련서비스 이용자/노인인구)×100
	장애인돌봄 이용자 비율	백분율	(장애인돌봄관련서비스 이용자/등록장애인)×100
	영유아돌봄 이용자 비율	백분율	(영유아돌봄관련서비스 이용자/영유아인구)×100
고용	노인일자리사업참여비율	백분율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수/65세 이상 인구)×100
	사회적기업 고용률	백분율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수/전체 고용인수)×100
	자활성공률	백분율	(탈수급, 취업, 창업자 수/자활참여자 수)×100
	취업성공패키지성공률	백분율	(참여자 중 취업인원 수/취성패 참여자 수)×100

서울시 자치구 복지 현황

서울시복지재단 2015-51(온라인 전용)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임성규

편집인 김혜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전화 02-2011-0400

팩스 02-2011-05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디자인 명문인쇄공사

I S B N 978-89-6298-373-9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복지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 2가 1-43)
전화 02-2011-04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